



중국, 양로보험 개선 방안 발표

이소양 연구원

■ 11월 26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현행 양로보험 유형 간 상호 전환할 수 있도록 ‘도농양로보험 제도연결잠정방법(의견 수렴안)’(이하 ‘잠정방법’이라 함)을 발표함.

- 중국의 현행 양로보험제도(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해당)는 종업원 기본양로보험(1997년 도입, 도시 취업자를 대상),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(2009년 도입, 농민을 대상), 그리고 도시주민 사회양로보험(2011년 도입, 도시 미취업자를 대상)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취업상태 변동에 따라 양로보험 이중 가입자가 존재할 수 있으나 양로보험 유형 간 상호 전환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.
 - 중국 국가회계서에 따르면 2011년 말까지 종업원 기본양로보험과 신형농촌 사회양로보험 혹은 도시주민 양로보험의 이중 가입자는 112.4만 명을 기록함.

■ ‘잠정방법’은 양로보험 상호 전환 대상, 전이(轉移) 금액 및 기존 납부월수의 환산 방법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음.

- 적용 대상은 현행 양로보험에 두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에 가입하고 있고 양로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양로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 가입자들로 한정됨.
- 가입자가 양로보험을 전환할 때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계좌적립금만 전이(轉移) 금액으로 한정됨.
 -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은 고용자가 납부하는 사회총괄계좌기금과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계좌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, 신형농촌 양로보험기금 및 도시주민 양로보험기금은 모두 정부가 내는 보조기금과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계좌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이 신형농촌 양로보험 혹은 도시주민 양로보험으로 전환될 경우, 기존의 납부월수가 누적 방식으로 합산되나 신형농촌 양로보험 혹은 도시주민 양로보험이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기존의 납부월수가 환산되지 않음.

- 도시 취업자를 대상으로 도입한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의 개인 납부 금액이 저소득층인 농민 및 도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형농촌 사회양로보험 및 도시주민 사회양로보험의 개인 납부 금액과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됨.
- 또한 ‘잠정방법’은 양로보험에 이중 가입하고 보험료를 중복 납부하는 사람에게 중복 납부 보험료를 반환한다고 규정함.

(신랑망, 11/27 등)